【법률개정 안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규칙)이 제정되어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내용

□ 다중이용업의 분류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다중이용업 분류	근거 법령
•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 지상층 :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 - 지하층 :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 이상 * 영업장이 피난층에 설치되고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 제외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제16호 가목 및 나목
• **학원** - 수용인원 300인 이상 -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다음 중 어느 하나 (학원용도와 기타 용도가 방화구획 된 경우 제외) 가.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경우 나.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다.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목욕장업** -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 -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시설을 갖춘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적용 제외 :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피난층에 설치되고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인 경우(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 제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6호·제7호 및 제8호
• **노래연습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13호
• **산후조리업**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
•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 -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디(D) 등급 이하 - 고시원업,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 시행일, 적용례 및 경과조치 등

◇ 근거 법령

-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조, 제4조

◇ 내 용

• 시행일 : 2007년 3월 25일

•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 설치 적용례

⇒ 2007년 3월 25일 이후 영업을 시작하거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영업부터 적용

• 기존 영업장의 안전시설등 경과조치

⇒ 2007년 5월 30일까지 설치

⇒ 비상구 설치 :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

(1) 실내장식물 면적(천장과 벽을 함한 면적)의 10분의 9이상을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설치한 경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 재건축·재개발 및 도시계획에 의한 수용지역에 있는 다중이용업에 대한 안전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 수용지역 내 있는 다중이용업소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철거가 확정된 경우로서 구획된 각 실마다 자동확산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의 설비 등의 설치를 철거 시까지 유예 할 수 있음

(1) 비상구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3) 방염물품에 대한 방염처리

□ 다중이용업의 안전시설 등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

◇ 근거 법령

-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별표 2

◇ 설치대상

1. 소방시설 등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포함) : 영업장이 지하층에 있고 바닥면적(계단·화장실·복도 등 공유면적 포함)이 150㎡ 이상인 경우

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라. 방화시설 : 방화문과 비상구

2. 영업장 내부 통로와 창문

- 고시원업

3. 그 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

4. 피난안내도의 비치 등
  (1) 피난안내도
  • 비치 대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
      - 영업장내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
  • 비치 위치
      -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구획된 실(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2)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 상영대상
      -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 노래연습장업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함)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마다 피난안내도를 비치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
      -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D등급 이하이거나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
  • 상영시간
      -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영 시기(時期)는 아래와 같음
        ◦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 노래방 기기(機器)가 처음 작동 될 때
  (3)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 피난 및 대처방법

◇ 설치기준

1. 소방시설 설치기준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특례기준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NFSC 103A에 따라 설치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간이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이상을 NFSC 303, 304에 따라 설치	
4. 휴대용비상조명등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NFSC 304에 따라 설치	
5. 피난기구	영업장에는 피난기구를 NFSC 3041 따라 설치	
6. 비상벨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는 그 중 하나 이상을 NFSC 201에 따라 설치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연동(連動)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비상구 설치기준

가. 공통기준

(1) 설치대상

비상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가) 주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

(나)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는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2) 설치위치

비상구는 영업장의 주 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할 것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의 누운변(장변 : 長邊)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음]

(3) 비상구 규격

가로 75㎝ 이상, 세로 150㎝ 이상(비상구 문틀을 제외한 비상구의 가로×세로를 말함)

(4) 문의 열림 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비상구는 구획된 실(구획된 실이 영업장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준불연재료(準不燃材料) 이상의 것으로 구획된 경우를 제외)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5) 문의 재질

주요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바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음

(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나)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방화구획 및 계단의 설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경우

나. 복층구조(複層構造)의 영업장의 비상구 설치기준

영업장 구조	설치기준	특례기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가 설치되어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	1.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것. 2. 비상구문은 방화문의 구조로 설치할 것 3. 비상구문의 열림 방향은 실내에서 외부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영업장의 위치·구조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어느 하나의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2. 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

다. 영업장의 위치가 4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하인 경우 비상구 설치 기준

피난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 난간을 설치한 것을 말한다) 또는 부속실(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크기로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을 말한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알맞는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3.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기준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설치할 것

4.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방화구획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開口部)에는 자동방화댐퍼(damper)를 설치할 것

5.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기준

가. 설치대상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

나. 설치기준

(1) 영상음향차단장치는 화재시 자동 또는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2)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일정하게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그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 표지를 부착 할 것.

(3)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6.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가. 설치대상

영업장 안에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할 것. 다만, 유도등(誘導燈)·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유사시 대피가 용이한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설치기준

피난유도선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라 설치할 것

7. 영업장 복도·통로 설치기준

가. 적용대상

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고시원 영업장

나. 복도·통로 폭 기준 : 복도·통로 폭은 최소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구획된 실에서부터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이르는 복도·통로의 구조는 3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8. 영업장 창문설치기준

가. 적용대상

고시원업의 영업장

나. 창문의 설치기준

층별 영업장 내부에는 가로 5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창문을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1개 이상 설치할 것

9. 안전시설등 설치의 특례기준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영업장에 대해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화재위험유발지수가 영 제13조에 따른 기준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비상구 또는 그 밖의 안전시설 설치를 면제한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비상구의 크기, 비상구의 설치거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구경(口徑)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시설등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안전점검

◇ 근거 법령

-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별표 제10호 서식

◇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1. 안전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등

2. 안전점검자의 자격

- 해당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 (방화관리자가 선임된 경우에 한함)
- 해당 업소의 종업원 중 방화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3.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점검방법
   - 소방시설등의 작동여부를 점검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

[별지 제10호서식]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1. 점검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주 용 도		
건물구조		대표자		방화관리자	

2. 점검사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①안전점검표비치 적정여부 ②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처리상태 적정성 ③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의 비치적정 및 기능점검 ④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적정성 ⑤피난설비 적정성 - 유도등·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피난기구 등 기능점검 ⑥경보설비의 적정성 - 비상벨설비,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기능점검 - 경보설비의 각실 설치여부 ⑦방화시설의 적정성 - 방화문 성능의 적합성 (시험성적서, 열림구조, 기밀도등) - 비상구(비상탈출구)의 구조 적합성(크기, 위치, 피난용이성 등) ⑧영상음향차단장치 기능점검 - 위치, 작동방법등 ⑨누전차단기의 기능점검 ⑩피난유도선 확인 - 피난유도선의 각실 배치여부 ⑪화기취급장소 및 위험물 안전관리 상태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 근거 법령

- 시행규칙 제5조

◇ 주요 내용

1. 소방안전교육 실시통보
   -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

2. 다중이용업 관련 교육과 병행 실시
   - 다중이용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및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 관련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음

3.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

4. 소방안전교육의 횟수 및 시기
   - 신규교육
     신규 다용이용업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은 그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수시교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9조제1항·제10조·제11조·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4조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해당 업소에 종사하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종업원 1인 이상

5. 소방안전교육시간
   - 4시간 이내

6. 신규로 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